의안번호	2212875
의 뢰 인	박수영 의원
회 답 일	2025. 9. 24.
추계번호	25F5004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항공기 부분품[1] 중 TCA 품목[2]에 대한 관세의 단계적 감면율 인하를 삭제하고 전액 관세가 감면되도록 100%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관세는 2026년 226억원 감소하고, 2029년에는 250억원 증가하는 등 2026년에서 2029년까지 4년간 총 1,170억원(연평균 29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변화 : 관세, 2026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항공기부분품 관세 면세 (안 제89조제1항)	−226	−468	−726	250	−1,170	−293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9조제6항 (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)	○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사용하는 항공기 부분품 중 WTO 민간항공기협정(TCA) 대상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율의 단계적 인하 삭제 및 전액 감면 적용기한 연장 – 적용기한: (현행) 2025년 말까지 100%, 2026년 말까지 80%, 2027년 말까지 60%, 2028년 말까지 40%, 2029년 말까지 20%로 단계적 감면율 인하 → (개정안) 2028년 말까지 100% 관세 감면	

1) 항공기 제조 및 수리에 투입되는 원재료· 부분품

2) 「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」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. WTO 민간항공기협정(TCA,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)은 항공기 부품의 교역자유화를 위해 민간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및 과징금을 철폐하는 협정이며,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아니함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89조제6항 (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개정안이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년 이후 수입분부터 개정 감면율이 적용됨을 가정

❑ 2024년 TCA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감면 미적용시의 품목별 관세 부과액 추정

○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실적은 증가추세이므로 가장 최근인 2024년 실적을 기준으로 함

-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항공수요가 회복된 점에 기인

❑ 2024년 이후 항공기 운항수요 회복 전망에 따라 항공기 부분품 수입액이 증가하여 관세 감면액 또한 증가함을 가정

○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항공수요는 2025년에서 2044년까지 매년 3.4%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[3]됨에 따라 항공기 수리에 따르는 부분품 수요도 이에 따라 증가함을 가정

❑ FTA 활용 증가 등에 따른 관세 감면 효과는 본 추계에서 고려하지 아니함

3) IATA 20-Year Passenger Forecast (2024~2044), IATA, 2024.6.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❑ (제도 개요)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 제조·수리 용도로 항공기 부분품·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

○ TCA 대상 품목의 경우 2025년까지 100% 감면, 이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감면율 20%p씩 축소하여 2030년은 관세 감면 폐지

❑ (감면실적) 2024년의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액은 총 1,322억원

○ 이 중 TCA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액은 1,059억원

[표 2]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액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
TCA 품목	373	383	497	797	1,059
비 TCA 품목	168	130	188	229	263
(중소기업)	39	30	45	77	105
(중소기업 제외)	129	100	143	152	158

자료: 관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나. 추계방법

❑ 개정안은 WTO 민간항공기협정(TCA) 대상 품목에 포함된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조항의 단계적 일몰일정을 적용하지 않고 2028년 말까지 100% 감면율을 적용하려는 것인

○ 현행은 2025년까지 100% 감면되다가 2026년부터 20%p씩 감면율이 축소되어 2030년에는 감면율 미적용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TCA 대상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율 변화

(단위 : %, %p)

	'26	'27	'28	'29
현행(A)	80	60	40	20
개정안(B)	100	100	100	0
차이(B−A)	20	40	60	−20

❑ 2024년 관세 감면액을 기준으로 향후 항공수요 전망에 따라 감면이전 관세 부과액 추정

○ 2024~2044년 전세계 항공수요 증가율(전망): 연 3.4%

[표 4]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부과액 전망(감면 이전)

(단위: 억원)

	2024 (기준연도)	2025	2026	2027	2028	2029
TCA품목	1,059	1,095	1,132	1,171	1,211	1,252

자료: 항공수요 전망은 IATA 20-Year Passenger Forecast (2024~2044), IATA, 2024.6.에 따름

❑ 세수효과는 2026~2029년 감면 규정 적용 전의 관세부과 전망액에 품목별 관세감면율 변동분을 적용한 값으로 감면액 변동분을 산출하여 추정

[표 5]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 상승에 따른 감면액 변동 효과

(단위: %p, 억원)

		2026	2027	2028	2029
TCA 품목	관세부과액(100% 기준)	1,132	1,171	1,211	1,252
	감면율 변동분(%p)	20	40	60	-20
	감면액 변동분	226	468	726	-250

다. 추계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항공기 부분품 중 TCA 품목에 대한 관세의 단계적 감면율 인하를 삭제하고 전액 관세가 감면되도록 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관세는 2026년 226억원 감소하고, 2029년에는 250억원 증가하는 등 2026년에서 2029년까지 4년간 총 1,170억원(연평균 29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변화 : 관세, 2026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항공기부분품 관세 면세 (안 제89조제1항)	−226	−468	−726	250	−1,170	−293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